

2023년 「대전형 융합신산업 창출 특구기술 실증 선도사업」 사업 공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2023년 「대전형 융합신산업 창출 특구기술 실증 선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7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고 영 주

I. 개요

□ 추진 목적

- 대덕특구에서 생산된 혁신 기술이 대규모 밀착형 실증 지원을 통한 융합 신산업 창출 및 대전지역 딥테크 실증 사업화 모델 구현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대전형 융합신산업 창출 특구기술 실증 선도사업
- 지원대상 : 대덕특구 기술을 이전받은 대전 소재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실증장소에 설치 또는 작동·적용하여야 함
- 사업기간 : 2023. 1. 1. ~ 2024. 12. 31.
※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1단계 사전기획과 2단계 실증사업을 포함한 기간임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전문 컨설팅 + 실증 사업비

구 분	(1단계) 사전기획	(2단계) 실증사업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지원	과제별 500백만원 내외
선정과제	8개 이내	2개 이내
지원기간	2개월	12개월

※ 1단계 사전기획 8개 이내 컨소시엄을 선정 후, 추후 평가를 통해 2개이내 실증사업 최종 선정·지원

II. 세부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대덕특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실증 진행, 상용화 단계까지 지속적인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기술성숙도 성장 기대
 - 시장과 수요처의 요구에 초점을 둔 사업화 관점의 효율적인 실증 추진
 - 대전이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실증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을 통한 지역 내 딥테크 실증 사업화 선순환 기대
 - 출연(연) 기술이전을 통한 R&D 수준의 초기 테스트를 넘어 실제 현장의 대규모 실증을 위한 사업 모델
 - 모든 분야의 실증-사업화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실증사업을 통한 비즈니스 목적 달성을 위한 PoC(Proof of Concept) 개념의 실현 여부 판단·확정 또는 프로토타입(Prototype) 현장 실증
- 시제품 제작 및 인·검증, 생산 스케일업(Scale-up), 제품 레퍼런스(reference) 확보, 현장 수요기업 연계 Track-record 확보 등 실증 테스트베드 개념

□ 컨소시엄 구성



※ 사전기획과제와 실증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개 이상의 복수의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1단계 사전기획

- 제시된 사업계획서 및 실증 설계를 기본으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실증사업 계획서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 전략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컨소시엄 구성) 주관/참여기관은 대전지역 기업, 출연(연), 대학 등 실증 및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내용) 컨소시엄별 맞춤형 전담 전문가 구성을 통한 밀착형 지원, 2단계 실증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실증화 모델링 고도화
 - (선정 및 기간) 8개 과제 이내, 2개월
 - 1단계 사전기획 컨설팅 완료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2단계 실증사업 컨소시엄 선정

□ 2단계 실증사업

- 사전기획을 통해 수립된 실증화 모델링(DM : Demonstration Modeling) 및 사업화 전략을 바탕으로 기술 실증 수행
 - 현장 실증 테스트를 통해 상용화 단계까지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신뢰성 확보, 기술성숙도 성장, 레퍼런스 확보, 사업성 검증/결정, 기술 및 기업 홍보, 컨설팅 지원을 통한 딥테크 기반 지역기업으로의 퀀텀점프(Quantum Jump) 성장
 - (지원내용) 500백만원 내외/과제당
- ※ 민간부담금 20%(현금 50% 필수) 이상 매칭 / 총 사업비 600백만원 내외
- (선정 및 기간) 2개 과제 이내, 12개월



Ⅲ. 신청자격

□ 사업의 취지

- 특구 대형 기술의 융합사업 발굴 및 본 사업을 통해 대덕특구의 공공기술과 기업의 사업화 수요 간 간극을 좁히고, 기술 성숙화(인큐베이션)와 사업화 지원
- 대덕특구의 딥테크(원천기술, 융합기술, 대형기술, 복합기술) 실증 지원
- 1단계 사전기획 역량강화 지원과 2단계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대덕특구 기술의 사업화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별 사업 진행

□ 신청 요건

-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과제기관 동안 해당 기관의 재직이 보장되는 자
 - (구성) 실증 및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3개 이상의 복수의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주관 및 참여기관 : 대전지역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위탁기관 : 지역에 상관없이 참여 가능
 - 실증 사이트 : 대전지역 내
- ※ 주관기관은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법인등록 사업장 주소지 기준) 필수이며 기업(본사, 지사 또는 연구소), 출연(연), 대학 등 가능

□ 신청 제한

- (성실수행) 본 사업의 2단계 실증사업은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 (3책 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단 1단계 사전기획은 해당없음)
 - (참여제한) 접수 마감일까지 부정행위 등에 의한 과제 참여 제재 처분으로 참여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신청 및 참여 제한
- ※ 기타 유의사항 중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IV. 접수 방법

○ 신청기간

구 분	1단계 사전기획	2단계 실증사업
공고기간	'23. 7. 3.(월) ~ '23. 8. 4.(금) (33일간)	
접수기간	'23. 7. 31.(월) ~ '23. 8. 4.(금)	'23. 11. 13.(월) ~ '23. 11. 17.(금)

※ 2단계 실증사업 접수 기간의 경우 DISTEP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단계 사전기획 신청서 10부 (첨부자료 6종* 포함한 원본 1부)

* ①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총괄책임자), ②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주관/참여기관 전체), ③기관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증빙자료, ⑤대덕특구 기술이전 증빙자료, ⑥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기업만 해당)

※ 본 사업 특성상 과제명에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실증'으로 작성

※ 2단계 실증사업의 경우, 1단계 사전기획과제 선정기관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첨부자료(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및 원본 서류와 사업신청서 인쇄본 10부는 방문 제출

※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전자파일, 인쇄본 모두)접수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처 : 실증혁신부 조은솔 연구원, sole@distep.re.kr, 042-865-0558

- 주소 : (34115)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99, 대전과학산업진흥원 2층 실증혁신부

○ 참가제외 대상(타 실증 지원사업 수행)

- 동일 제품 및 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실증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이거나 중복되는 과제 사업기간에 실증을 수행 예정인 경우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실증혁신부	김동진 선임	042-865-0536 / djkim@distep.re.kr
	조은솔 연구원	042-865-0558 / sole@distep.re.kr

V. 선정평가

□ 단계별 선정절차

○ 1단계 사전기획



- (선정방법)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 평가
- (평가방식) 선정평가*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이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주관기관은 발표자료(PPT/PDF)를 제출하고, 총괄책임자가 발표/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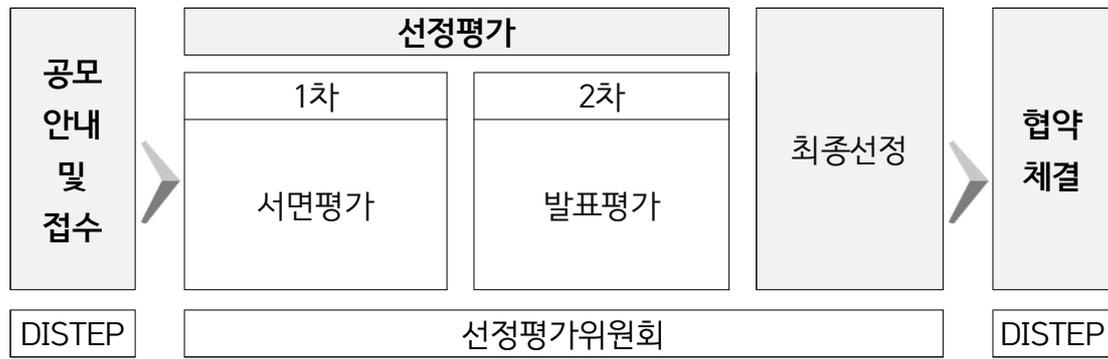
** 최고, 최저점이 복수일 경우 한 개만 제외하며, 7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 가능한 과제 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균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 만약 종합평균 점수가 동점일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기술성·실증적합성→시장성·사업성” 순서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1단계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 실증의 목적, 방법, 목표, 기대효과
	추진 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 추진전략(내용)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컨소시엄 구성 및 실증사이트 확보	· 사업수행을 위한 구성요소
기술성 실증적합성	기술성숙도, 기술권리성	· 실증·사업화 관점 기술 성숙화 정도
	실증모델링 전략	· 실증현장 커스터마이징 전략 및 구체화 정도
시장성 사업성	파급효과의 우수성	· 파급효과의 구체성 및 우수성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 성장 가능성

※ 선정평가 기준은 DISTEP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2단계 실증사업



- (1차 서면평가) 필수 제출서류 확인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실증화 모델링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제외 대상 여부 확인

*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2차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2차 발표평가) 사업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고 실증화 모델링 전략 및 향후 성과 활용계획 및 사업비 심의**

* 사업 총괄책임자가 사업내용 발표와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종합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나 추가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2차 발표평가 후 DISTEP은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실증사업 계획서를 재검토 및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재검토 및 수정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과제를 최종 확정

○ 2단계 평가 기준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구분	평가지표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실증의 목적, 방법, 목표, 기대효과
	추진 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 추진전략(내용)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컨소시엄 구성 및 실증사이트 확보	· 사업수행을 위한 구성요소
기술성 실증적합성	기술성숙도, 기술관리성	· 실증·사업화 관점 기술 성숙화 정도
	실증모델링 전략 적정성	· 실증현장 커스터마이징 전략 및 구체화 정도
시장성 사업성	시장의 파급효과	· 파급효과의 구체성 및 우수성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 성장 가능성
1단계 사전기획*	참여도, 현장점검(주관, 실증예정 사이트)	· BM·IR 컨설팅 참여도, 현장점검

* 1단계 사전기획 평가지표인 참여도 및 현장점검 결과의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DISTEP 제공)

※ 선정평가 기준은 DISTEP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VI.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 협약체결

- 2단계 실증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컨소시엄(주관/참여기관) 구성 다자 간 협약체결

□ 사업비 편성 및 지급

- (사업비 편성) 기술 및 제품의 현장 실증 테스트 검증과 실증 모델링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 중심으로 편성

* 사업비 세부 비목별 편성은 추후 안내 예정. 사업비는 2단계 실증지원에 필요한 비용만 인정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급하여 편성 불가

- (민간부담금) 대전시 지원금의 최소 20% 이상 민간부담금(현물, 현금)*을 컨소시엄 내에서 자유롭게 매칭

* 민간부담금(시 지원금의 20% 이상) 매칭 시 최소 50% 이상 현금매칭 필수

- (사업비 지급) 사업비(시비)는 협약 후 주관기관에게 분할하여 지급
- 사업비(시비)는 협약 후 1달 이내로 전체 금액의 70%(착수금)를 지급하고
중간점검 후 1달 이내로 30%(잔금) 지급

※ DISTEP 대내외 상황에 따라 분할지급 변경 가능

※ 필요서류 : 이행보증보험(주관기관 발급), 지정은행 사업비 신설계좌

※ 총사업비(시비 및 민간부담금)는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기존계좌,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중간점검(중간보고회, 사업비 자체 중간 점검 제출, 현장점검 포함)

※ 사업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4호)에 의거하여 편성

□ 사업관리

- DISTEP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교육 및 근접지원과 관련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DISTEP의 현장점검 및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Ⅶ. 기타 유의사항

□ 의무 및 역할

- 본 사업은 지자체 지원사업이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등의 법령 및 공고문과 협약서의 내용 등을 준용함
-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된 컨소시엄은 대전시 및 DISTEP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된 컨소시엄은 협약 종료 연도 이후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된 컨소시엄은 DISTEP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실증사업 시연회 및 실증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선정된 컨소시엄은 DISTEP이 정한 기한 내에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나온 성과는 대전지역을 소재로 하여 최소 5년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는 사업비 전액 환수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3책 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이나 1단계 사전기획*은 제외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함
-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주요한 사항은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을 발견하면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내용이 사업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3년 연내 민간 부담금(현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2단계 실증사업 해당)
- 실증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기술개발 성격인 과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2단계 실증사업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앙부처의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으로 인해 과제수행이 어려운 경우(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 분류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신청 후 유의사항

- 2단계 실증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DISTEP 전담 은행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해야 함
- 2단계 실증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시비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필수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사업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에 따라 컨소시엄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컨소시엄 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은 소유권 외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